

제 3 0 0 회 임 시 회  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---

# 보 고 안 건

---

2021. 4

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

# 1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개정안 보고

## □ 개정이유

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(‘20.12.31.시행) 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, 서울특별시 ‘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’(19.1.16.)을 반영하고, 오타를 수정하여 정관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오타 정정 (안 제7조제6항)
  - “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” → “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”
- 임원 연임 ‘1년 단위’ 개선 (안 제9조)
  - 임원은 연임할 수 있되, 1년 단위로 연임 가능
- 결산서 제출시기 변경 (안 제29조제2항, 제3항)
  -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결산서 제출시기 단축: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→ 2개월 10일 이내 (제2항)
  -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결산보고 시기는 3개월 유지 (제3항 신설)

## □ 참고사항

- 제안근거
  -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
  -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\*(19.1.16.)
    - \* 지방공기업법(연임 1년 단위)의 적용을 받는 투자기관과 비교하여, 출연기관(정관에 따른 연임)의 인사제도의 통일적 운영 도모
    - ※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 공문 시행으로 인한 정비 시기 지연

## ○ 추진절차 및 일정

구분	서울특별시장 승인	→	시의회 상임위 보고	→	이사회 의결	→	보건복지부 허가	→	시행
일정	‘21.3월 중		4월 중순		5월 초순		5월 중순		5월말

※ 현행 정관 개정 변경절차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 보고(안)에 대한 사전 승인 진행

#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7조(임원의 선임) ①~ ⑤ (생략)</p> <p>⑥ 이사,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연임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제7조(임원의 선임) ①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제5항----- ----- -----, ----- ----- -----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선임직 이사(대표 이사를 포함한다)의 임기는 3년,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/p>	<p>제9조(임원의 임기) ① ----- -----, -----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</p>
<p>제29조(결산) ① (생략)</p> <p>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〈신 설〉</p>	<p>제29조(결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

## 2.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예비비사용 보고

'21년 3월 임용 예정인 제10차 신규 채용자 및 총원 인력 인건비 및 긴급·틈새 돌봄지원사업 예산 마련 위해 예비비를 일부 사용하고자 함

### □ 추진근거

- 2020년 회계연도 세입·세출 결산(안), 2021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(안)
-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회계규정 제67조

제67조(예비비)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비용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.

②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우선 집행 후 사후의결로 할 수 있다.

### □ 예비비 사용사유

#### ① 제10차 신규 및 총원 인력 인건비 마련 위한 예산 확보 필요

- 예산과목 : 예비비 - 정현원차 봉급예비비
- 전용사유 : **신규 총원 2명의 인건비** 재원 마련 필요
  - 「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」에 따라 '21년 예산(안) 승인 당시 '20년말 현원 481명 해당액에 대해서만 본 예산 편성
  - 제10차 채용으로 인한 신규 임용자와 결원 인력 총원 인건비 마련  
종합재가센터 사무원 1명(3월 배치), 전문서비스직 나급 1명(1월 배치)
  - 금회 신규 채용 인건비 마련을 위해 「정현원차 봉급예비비」의 사용 승인을 얻고자 함
- 편성요구액 : 67,620천원 (단위 : 천원)

봉급예비비 총액(A)	금회 사용액(B)	예산잔액(A-B)
3,709,075	67,620	3,641,455

② 긴급·틈새돌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추가예산 확보 필요

- 예산과목 : 예비비 - 일반예비비
- 전용사유 : 긴급 돌봄지원단 운영 사업을 위한 국비 매칭 재원 마련 필요  
- 「자체긴급돌봄사업」 예산액으로 편성하여 사업비로 사용
- 편성요구액 : 95,5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일반예비비 총액(A)	금회 사용액(B)	예산잔액(A-B)
322,000	95,500	226,500

◆ 보건복지부 「2021년 긴급·틈새 돌봄지원사업」 추진을 위해 재원 편성 필요

⇒ 국비(110,500천원)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(50:50) 부담금 110,500천원 증액  
교육훈련비(15,000천원)는 당초 편성된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예산에서 조정·사용

① 「자체긴급돌봄사업」 인건비 소요액

: 191,000천원 = 95,500천원(국비) + 95,500천원(일반예비비)

▶ (단기계약직 인건비) 4,000천원 × 43명 × 50% = 86,000천원

▶ (4대보험 기관부담분) 442천원 × 43명 × 50% = 9,500천원

② 「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지원사업」 교육훈련비

: 30,000천원 = 15,000천원(국비) + 15,000천원(자체예산)

구분	예산액			교부액		
	계	국비	시비	계	국비	시비
합계	442,000	221,000	221,000	221,000	110,500	110,500
① 자체긴급돌봄사업	412,000	206,000	206,000	191,000	95,500	95,500
② 의료기관 돌봄인력 모집 지원사업	30,000	15,000	15,000	30,000	15,000	15,000

□ 총 예비비 요구액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예산과목		예비비 승인 요구액	비고
	단위사업	편성목		
총 계			163,120	
좋은 돌봄제공을 위한 통합돌봄 체계구축	종합재가센터 확대운영	계	67,620	보급 예비비
		급여	44,000	
		제수당	10,480	
		퇴직급여	4,500	
		복리후생비	8,640	
긴급돌봄지원단 운영	긴급·틈새 돌봄지원사업 운영	계	95,500	일반 예비비
		급여	86,000	
		복리후생비	9,500	